CSF 이슈분석

2017-14

「 비즈니스 」

■ 중국

2018년 시행 예정인 「환경보호세법」의 주요 내용 및 전망

박창은 변호사(본부장) 세무법인 신승

주요내용

- ‘16년 12월 25일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이하 <환경보호세법>」이 통과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현행 오염물배출비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규제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비용의 세금전환(费改税)’과 조세법률주의(税收法定原则)에 근거하여 환경보호세의 입법화를 추진함.
- <환경보호세법>은 총칙, 과세기준과 미지급세금, 세금감면, 징수관리, 부칙 등 5장 28조항으로 구성되어있음.
- 환경보호세의 입법화로 인해 중국의 환경보호 규제 및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며, 환경보호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 E-MAIL: csf@kiep.go.kr http://csf.kiep.go.kr/ http://www.kiep.go.kr/

1. 이슈 현황

■ **'16년 12월 25일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이하 〈환경보호세법〉」이 통과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환경보호세법>은 '비용의 세금전환(费改税)'과 조세법률주의(税收法定原则)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입법의 주된 목표는 엄격한 법률제도를 통한 중국의 환경 보호 및 개선, 오염물배출 감소, 생태문명건설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환경보호세의 입법화 논의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고, 2011년 10월 21일 국무원의 「환경보호 핵심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加强环境保护重点工作的意见)(이하, <의견>)」이 발표되면서 환경보호세 도입이 적극 검토되었음.
- <의견>이 발표된 후 세무, 환경보호 관련부처는 환경보호세 연구업무에 착수하였으며, 약 5년간의 입법기간 동안 수많은 논의를 거친 다음에서야 <환경보호세법>이 제정되었음.
- <환경보호세법>은 중국 최초의 전문적인 '녹색세제(绿色税制)'이자,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한 단일 세법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음.
- <환경보호세법>이 시행되면 현행 오염물배출비 제도는 실효될 예정임.

2. 원인과 분석

■ **현행 오염물배출비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규제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환경보호세의 입법화를 추진함.**

□ 오염물배출비의 징수관리 제도의 문제점

- 오염물배출비 제도는 1979년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법」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오염물 처리 자금의 조달과 환경오염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음.
- 그러나 오염물배출비제도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등 자체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그 시행과정에서 △집행 강제성 부족, △지방정부의 간섭, △오염물배출 효과 미약, △ 오염물 배출 비용의 중복징수 문제 등이 발생하자 세금으로 전환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규제 및 관리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정부는 조세의 수평적 이전(税负平移) 원칙에 입각하여 오염물배출비제도를 환경보호세제도

로의 수평이전(平稳转移)을 실현함.

- 오염물배출비를 납부하는 자를 환경보호세의 납세자로 규정함.
- 오염물배출비의 항목, 징수기준, 계산방법에 근거하여 환경보호세의 세목, 세액기준, 계산방법을 정하였음.

〈환경보호세법〉은 5장 28조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요내용은 조세법률주의(税收法定原则)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 (납세의무자) 중화인민공화국 영역과 중화인민공화국 관할의 기타해역에서 직접 과세대상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사업체 및 생산경영자

□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 과세대상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형폐기물, 소음 4종류이며, 과세대상별로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규정되어 있음(표1 참조).

표1. 환경보호세의 세목 및 세액표

세목		과세단위	세액
대기오염물		오염당량[1]	1.2원-12원
수질오염물		오염당량	1.4원-14원
고체폐기물	매간석	톤	5원
	미광	톤	15원
	위험폐기물	톤	1000원
	제련 잔여물, 분말연탄재, 광재, 기타고체폐기물(반고체, 액체폐기물 포함)	톤	25원
소음[2]	공업소음	1-3 데시벨	월 350원
		4-6 데시벨	월 700원
		7-9 데시벨	월 1400원
		10-12 데시벨	월 2800원
		13-15 데시벨	월 5600원
		16 데시벨 이상	월 11200원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

1) 오염당량(污染当量):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비 징수의 과세단위로, 오염물 또는 오염물 배출 활동의 환경 유해성과 처리기술의 경제성에 근거하여 각 오염물의 환경오염을 평가하는 종합지표 또는 계량단위

2) - 하나의 업체 경계상 소음 기준 초과 지역이 다수인 경우, 최고 데시벨 지역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경계선에서 100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소음 기준 초과 지역이 2곳 이상인 경우는 2개 업체 모두 세액을 계산한다.
- 하나의 업체의 작업 장소가 다른 경우, 각각 세액을 계산하여 합산 징수한다.
- 주·야간 모두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야간 각각 계산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누적 계산하여 징수한다.
- 소음원이 1개월 내 15일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은 절반으로 계산한다.
- 야간에 소음이 자주 또는 간혹 발생하는 경우, 등효소음과 최고소음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 (세금감면) <환경보호세법> 제12조, 제13조에 감면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감경사유의 경우, 현행 오염물배출비 제도보다 확대되었음.

- 면제(제12조)
  · 농업생산(규모화 양식 제외)
  · 자동차, 철도기관차, 비(非)도로 이동수단, 선박, 항공기
  · 국가 및 지방의 배출기준을 초과교지 않는 오수처리장, 생활쓰레기 집중처리장
  · 국가 및 지방의 환경보호표준에 부합하는 종합 이용 고체폐기물
  · 국무원이 세금면제를 비준한 경우
- 감경(제13조)
  · 과세대상 대기오염물 또는 수질오염물의 농도가 국가 및 지방 기준 30% 미만인 경우, 환경보호세 75% 감경
  · 과세대상 대기오염물 또는 수질오염물의 농도가 국가 및 지방 기준 50% 미만인 경우, 환경보호세 50% 감경

현행 오염물배출비와 환경보호세의 비교

□ 기존 오염물배출비를 환경보호세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 유사한 부분이 많으나, 징수기준, 징수관리기관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표2 참조).

표2. 오염배출비와 환경보호세의 비교

항목	오염물배출비	환경보호세
대기/수질오염물 세액기준의 상한 규정의 유무	세액의 하한만 규정 (대기 1.2원/당량, 수질 1.4원/당량)	세액의 상한, 하한 모두 규정[3] (대기 1.2-12원/당량, 수질 1.4-14원/당량
수질오염물 징수대상 확대	오염량이 많은 상위 3개 수질오염물질	오염량이 많은 상위 8개 수질오염물질 (중금속 5개, 기타물질 3개)
징수관리기관	환경보호부	세무기관
집행 강제성 정도	약(弱)	강(强)
대기/수질 오염물 환경보호세 감경제도 확대	배출 농도가 배출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50% 감경	배출 농도가, - 배출기준의 30% 미만인 경우, 75% 감경 - 배출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50% 감경
징수 수입 귀속비율	지방정부 90% 중앙 10%	지방정부 100%
손해배상 규정 유무	무(無)	유(有)

자료 : 환경보호세법, 혜총망, 인민일보 등 - 내용 종합 및 정리

3) <환경보호세법> 제6조에 의하면, 지방 정부는 오염물배출현황 및 경제사회생태 발전목표에 따라 세액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각 지역별 세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전망과 시사점

■ 환경보호세의 입법화로 인해 중국의 환경보호 규제 및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환경보호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 환경보호세는 기업의 환경보호 의식 제고 및 오염물 배출 감소책임 강화 등 환경보호 규제 및 관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보호 관련 시설·설비에 투자를 유도하여 환경보호산업에 긍정적이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중국 정부는 징수한 환경보호세로 환경보호산업 발전 기금을 설립하여 오염물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사용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어, 중국의 환경보호산업 시장이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함.

□ 한편, 중국정부는 <환경보호세법>이 시행으로 기업의 과세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측에 대해, 환경보호세의 주된 목적은 조세수입의 확대가 아닌 기업의 오염물 배출 감소를 통한 녹색경제발전이며,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여 오염물을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적게 배출하는 기업은 더 적게 내는 것이라 밝힘으로써 논란을 일축함.

출처

1.「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2016年12月25日)
2.「三问环境保护税法」(中国财经报)(2016年12月28日)
3.「一文看懂—环保税与排污费相同与区别」(慧聪网)(2016年12月31日)
4.「解读《环境保护税法》」(中国•蚌埠门户网)(2017年1月20日)
5.「시행이 임박한 중국 환경보호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한국무역협회)(2016年10月25日)
6.「중국 환경보호세법 본격 시행 임박」(KOTRA)(2016年 11月 1日)

CSF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이슈분석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